

울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합146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홍하진, 남재훈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미정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지희, 허순민

변론 종결2022. 12. 14.

판결 선고2023. 2. 9.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7.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02,919,247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28,950,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판결금 채권

- 1) 원고 A는 'E'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금형 제조 및 제작, 자동차 금형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원고 A는 2017. 7.경 및 2017. 8.경 D로부터 금형 설계 및 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7. 11. 24. D를 상대로 위 금형 설계 및 제작에 따른 용역대금 합계 65,846,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608호, 이하 '이 사건 용역비 청구소송'이라 한다).
- 3)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18. 11. 27. 변론을 종결한 후 2019. 1. 8. "D는 원고 A에게 65,846,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나41737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5. 27. 변론이 종결되고 2020. 6.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20. 7. 14.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 A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의 D에 대한 채권

-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특수강철 도, 소매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D에 특수강철 등을 납품하였으나 D는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
- 2) 원고 B는 2018. 1. 30. D를 상대로 위 미지급 납품대금 84,820,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5. "D는 원고 B에게 84,820,79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214호). 위 지급명령은 2018.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 B의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와 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및 피고의 양수금 수령

1) D는 2019. 8. 7. F라는 상호로 금형수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G(상호: F)와 사이에, D가 G에게 H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금속도장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8. 5. 25. 설립된 회사인데, D는 2020. 7. 16. 피고와 사이에, D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동시에 D의 위 G에 대한 금형 제작대금 중 일부인 일본국 화폐 2,400만 엔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갑 제1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 양도인 D(이하 '양도인')과 양수인 피고(이하 '양수인')은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1. F(대표 G)가 양도인에게 지급예정인 I 프로젝트의 금형제작대금 중 계약서 상의 제3차 검수대금의 일부인 ¥24,000,000을 F가 양도인에게 지급할시,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하략)

차용증

채무자 D(이하 '채무자')는 채권자 피고(이하 '채권자')에 F에서 지급받을 금형제작대금의 일부 ¥24,000,000을 양도하고 차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연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하략)

3) D는 2020. 7. 22.경 G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사실을 통지하였다.

4) 피고는 2020. 12. 30. G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으로 244,845,230원을 수령하였다.

라. D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폐지

D는 2018. 4. 4. 부산지방법원 2017회합103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8. 9. 28.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2019. 3. 19. 울산지방법원 2018회합527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20. 1. 21.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8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들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지급명령 채권이 존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용역비 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4. 4. 및 2019. 3. 19. D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음에도 D의 관리인으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효력이 없고 위 채권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 2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가 이 사건 용역비 청구소송의 1심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전인 2018. 9. 28.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소송의 2심 계속 중인 2019. 3.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위 2심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전인 2020. 2. 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폐지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수계받은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유효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D의 무자력 갑 제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으므로, D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적극재산

1	1) 양산시 J리(이하 'J리'라고 한다) K 공장용지 15,351 m ² 2) L 도로 49 m ² 3) M 도로 136m ² 4) N 임야 570m ² 5) O 임야 277 m ² 6) P 임야 733 m ² 7) Q 임야 2,354 m ²	4,059,838,600원
2	K 지상 건물	1,676,034,700원
3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1,239,016,000원
합계	6,974,889,300원	

나) 소극재산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239,188,246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424,203,260원
3	양산시	54,639,710원
4	근로복지공단(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금)	433,955,550원
5	기술보증기금	3,371,289,704원
6	R 유한회사	8,044,316,981원
7	원고 A	92,698,078원 ¹⁾ 2020. 7. 16. 기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리금
8	원고 B	142,645,692원 ²⁾ 2020. 7. 16. 기준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원리금
합계	14,802,937,221원	

D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위 채무 외에도 S 등에 대한 임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D의 G에 대한 이 사건 금형 제작 대금채권의 존재

피고는, 이 사건 금형 제작계약은 D가 아니라 2019. 3. 19.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D의 관리인 T과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D는 G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할 수 없어 사해행위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 21. D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는바,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회복된다. 그리고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참조),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일어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이 적법하게 체결한 이 사건 금형 제작계약은 D에게 그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대금채권 역시 D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가 G에 대하여 이 사건 금형 제작 대금채권을 가지지 않는다거나 D의 G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효력이 없다는 피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 ① D는 원고의 이 사건 용역비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20. 7. 14.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7. 16.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② 피고는 2020. 5. 16. 본점 소재지를 D의 본점이 소재한 '양산시 K'로 변경하였다.
- ③ 피고는 당초 D가 G와 이 사건 금형 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금형 제작을 피고에게 다시 일괄하도급하였고, 위 일괄하도급 사실을 알게 된 G는 D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납품할 능력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D와의 위 제작계약을 취소하고, D 및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금형 제작을 D에게 하도급하는 형태로 제작하여 G에게 납품하는 대신 G는 위 금형 제작대금을 D가 아닌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구두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2022. 11. 17.자 서면에서는 D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할 자금이 없는 상태가 되어 피고에게 위 금형제작에 필요한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D에게 위 금형제작대금을 대여하지 않고 D 공장을 임차하여 직접 남은 공정을 제작 완료하여 G에게 납품하고 G로부터 제작대금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 G, 피고, D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가 D 공장 및 직원을 임차하여 이 사건 금형의 잔여 공정 30%를 직접 제작하여 G에게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다.

④ 피고의 주장을 크게 선행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G와 이 사건 금형의 잔여 공정 30%에 대한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오히려 2020. 7. 6.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D 측의 U에게 122,704,670원을 지급한 점, 피고는 D의 공장 및 직원을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D의 공장과 직원을 임차하면서까지 이 사건 금형 제작에 관여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피고가 D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G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채권 일본국 화폐 2,400만 엔에 대한 변제로 피고에게 244,846,73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채권을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면 위 244,846,730원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A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116,530,565원(= 원금 65,846,670원 + 2017. 10.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2022. 12. 14.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0,683,895원)이고, 원고 B의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197,168,239원(= 원금 84,820,791원 + 2018. 2. 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2022. 12. 14.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2,347,448원)이므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 313,698,804원은 이 사건 채권보다 큰 액수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그 양도된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2020. 12. 30. G로부터 244,846,73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가액배상으로 원고들이 각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102,919,247원, 원고 B에게 128,950,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숙

판사항지현

판사김은솔

별지

1) 2020. 7. 16. 기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리금

2) 2020. 7. 16. 기준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원리금